## 부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

( 제정) 2014.08.13 예규 제145호 (일부개정) 2018.11.30 예규 제167호 (일부개정) 2019.10.16 예규 제170호 (부산광역시 북구 공무국외여행 규정) (일부개정) 2022.08.18 예규 제180호

- 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공약사항"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, 공약자료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구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. 〈개정 2018.11.30〉
  - 2. "공약사업"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(이하 "실천계획"이라 한다)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. 〈개정 2018.11.30〉
  - 3. "총괄부서"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. 〈개정 2019.10.16〉
  - 4. "주관부서"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. 〈개정 2018.11.30〉
  - 5. "협조부서"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.
- 제3조(구민의 권리등) 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 〈개정 2018.11.30〉
  -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4조(관리체계)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별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하고,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게 한다.

- 제5조(공약사업의 확정)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-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8.11.30〉
  - 1. 법률적 검토(자치법규 포함)
  - 2. 사업의 적정성
  - 3.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 으로의 실천 가능성
  - 4.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
  -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,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8.11.30〉
  - ④ 구청장은 취임 10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및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며,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8.11.30〉
- 제6조(실천계획의 수립)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1. 비전과 전략, 추진방향
  - 2. 실천계획의 총괄개요
  - 3. 소요재원 및 조달 방안
  - 4. 공약사업별 추진계획
  -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·보완할 수 있으며,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취임 100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8.11.30., 2022.8.18.〉

- 제7조(실천계획의 변경) ①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사업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 〈개정 2018.11.30〉
  -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그 사유와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8.11.30〉
  -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실천계획변경 사항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은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, 관계전문가 및 공약이행평가단의의견수렴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. 〈개정 2018.11.30., 2022.8.18.〉
  - ④ 삭제 〈2022.8.18.〉
- 제8조(추진상황 관리)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실천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8.11.30〉
- 제9조(추진상황 점검)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, 점검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2.8.18.〉
  -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결과에 대하여 분석· 평가를 실시하고,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2.8.18.〉
  -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부진 또는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, 보완 및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8.11.30.]

제10조(공약이행평가단 운영) ①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약이행평가단(이하 "평가단"이라 한다.)을 구성·운영한다.

- ② 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추진사항을 평가한 결과 추진이 미흡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. 〈개정 2018.11.30〉
- ③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,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단원은 구민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 등으로 선정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. 〈개정 2018.11.30., 2022.8.18.〉
- ⑤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〈개정 2018.11.30〉
- ⑥ 구청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- 1. 본인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- 2.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
- 3. 평가단의 운영취지,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- 4.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
- ⑦ 삭제 〈2018.11.30.〉
- 제10조의2(공약자문단 운영) ①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· 이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약자문단(이하 "자문단"이라 한다)을 구성·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자문단은 공약사업 이행 전반에 대한 전문적 검토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.
  - ③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④ 단원은 정책 및 구정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  - ⑤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  - ⑥ 구청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- 1. 본인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- 2.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
- 3. 평가단의 운영취지,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- 4.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

[본조신설 2018.11.30.]

- **제11조(평가방법)** ① 공약이행 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, 필요할 경우 평가단에서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. 〈개정 2018.11.30., 2022.8.18.〉
  - ② 공약이행에 대하여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사업별 진척도, 사업비 확보 등을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,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.
  - ③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12조(외부평가)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.
  -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.
- 제13조(평가결과 환류) ①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,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8.11.30〉
  - ②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·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.
  - ③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 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.
- 제14조(공개)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확정, 실천계획의 수립과 변경, 추진상황,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 〈개정

2018.11.30., 2022.8.18.>

② 이행실적 공개 자료는 구민들이 공약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쉽게 작성하고,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. [제목개정 2022.8.18.]

부칙 〈예규 제145호, 2014.8.13.〉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예규 제167호, 2018.11.30.〉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예규 제170호, 2019.10.16.〉(부산광역시 북구 공무국외여행 규정)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지침의 개정) ① 부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"기획실"을 "기획감사실"로 한다.

② ~ ⑥ (생략)

부칙 〈예규 제180호, 2022.8.18.〉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